

취업규칙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김 해 관



[취업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2조(직원의정의) 이 규칙에 있어서 '직원'이라 함은 회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<u>G직, C직, A직 및 Sales직</u> 직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직원의정의) 이 규칙에 있어서 '직원'이라 함은 회사 인사규정에서 정한 <u>G직, A직</u> 직원을 말한다.</p>	<p>[개정내용] C,Sales 직의 G 직 전환에 따라 삭제</p>
<p>제11조(직권면직) 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<u>제3호 및 제6호</u>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~ 5. <생략> 6. <u>2회 이상 '대기발령' 시</u></p>	<p>제11조(직권면직) 인사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<u>제3호<삭제></u>의 사유로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~ 5. <생략> 6. <삭제></p>	<p>[개정내용] 저성과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</p>
<p><u>제11조의2(대기발령) ① 제11조 제6호의 '대기발령'이라 함은 2년 연속 성과평가 및 역량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 중 업무실적이 직원 평균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에 한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1조 제6호의 대기발령 시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교육훈련 제공 등 생산성과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1조 제6호의 대기발령에 대한 세부기준, 절차,</u></p>	<p><삭제></p>	<p>[개정내용] 저성과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 관련 삭제</p>

현행	개정	비고
생산성 향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한다.		

※ 부칙 (2018. XX. XX)

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C직 및 Sales직 직원의 G직 전환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.

